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 판사 출신으로 법리 알면서 근거 없는 궤변으로 국민 현혹

-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사인(死因)에 대한 경찰 발표 후에도 거듭된 허위 사실공표로 ‘고의성’ 명백
- 원내대표로서 공정선거 모범 보여야 함에도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민주주의 파괴행위
- 수사기관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사명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故 이병철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허무맹랑한 궤변을 펴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며, “수사기관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여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 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17일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수진·김남국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조오섭 대변인, 지원단 소속 김대식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병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녹취록 제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이미 무고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녹취록은 이병철과 최모 씨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병철과 최모 씨가 사건을 의뢰할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 원 정도 변

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낸 말”이고, “최모 씨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 1. 13. 故 이병철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라면서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이병철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2022.1.12.자 본인의 페이스북과 2022.1.13. 여러 방송사들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간접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이다”,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병철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법리를 잘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여러 인터뷰에서 거듭 공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병철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도 적시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식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